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비 수령시 임금을 임의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임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임금비용 구분지급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범위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4조의2 제2항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생 략)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상의 도급금액이 <u>5천만원</u>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상의 도급금액이 <u>3천만원</u>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